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2762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조준행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1.부터 2021.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서울 금천구 D건물, 5층 E호에서 'B'라는 상호로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마스크제조 등의 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는 위 C로부터 B의 사업을 양수받은 양수인이다. 한편 원고는 C에게 물품공급을 한 사업자이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

피고는 2020. 5. 22. 설립되었는데 C는 공동대표이사를 거쳐서 현재는 단독 대표이사이다. C는 2020. 12. 14.(양수도계약서 상 기재 날자는 2020. 11. 30.이지만, 공증한 날자를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본다) 피고와 B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의 대표이사 역시 C이므로 실질적으로는 C 1인에 의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양수도 대금 역시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물품공급 및 조정성립

원고는 C로부터 2020. 12. 중순경 물품공급에 관한 의뢰를 받아 2021. 1. 18., 2021. 1. 22. 두 차례에 걸쳐 C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은 21,700,000원이다. 원고는 C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13012호로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8. 18. 위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C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C)는 원고에게 21,700,000원을 지급하되, 2021. 9. 10.까지 7,000,000원, 2021. 10. 10.까지 7,000,000원, 2021. 11. 10.까지 8,7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C)가 위 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 금액 전부를 지급하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C의 개인회생신청

C는 2021. 9. 9. 수원지방법원 2021개회16166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5. 개인회생절차개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마. 피고의 폐업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3. 31.자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C가 자신이 운영하던 B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은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신의성실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C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신규 법인 설립의 형태가 아니고, 개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신규 법인 설립의 경우이지만, 마찬가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법인격 남용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C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C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① 원고와 C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및 물품공급 당시인 2020. 12.경부터 C가 운영하는 B의 영업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C가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C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② C는 2020. 12. 14.경 자신이 설립한 피고 회사에게 B의 사업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는 피고 회사에게 B의 자산, 물품 등 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채무인수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③ 기존의 사업체인 B와 신규 법인인 피고 회사의 상호명이 동일하다. 아울러 기존 사업체인 B의 대표자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C이다.
- ④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업양수도계약은 사실상 쌍방대리에 기한 계약체결이고 사업양수도대금

조차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대금 역시 지급하였는지 역시 불확실하다.

⑤ C는 2021. 9. 9. 수원지방법원 2021개회16166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함으로써 B 사업체의 채무를 모두 종결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⑥ C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2021. 1.경에는 이미 B 사업을 피고에게 양도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C는 원고에게 어떠한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고, 2021. 8. 18. 원고와 C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C의 미지급 물품대금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2021. 9. 11.부터(원고는 물품이 공급된 2021. 1. 22.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2021. 10. 2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홍준